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4. 11. 19 선고 2023가단1520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신

담당변호사 채동우, 홍하진

피고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심안

담당변호사 김재훈

변론 종결2024. 9. 3.

판결 선고2024. 11. 19.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22. 9. 8. 체결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182,100,25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2,100,2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22. 9.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나. 원고는 C를 상대로, 22. 4. 29.부터 2023. 2. 7.까지의 기계납품 거래 관련 지급받지 못한 잔여 물품대금 채권 182,100,25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지급명령(울산지방법원 2023차전635)을 신청하였고, 그 지급명령은 2023. 7. 22.경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각하였거나,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매각으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으므로 그 원상회복으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가액배상을 구한다.

나. 관련 법리

(1) 사해행위의 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라야 하며 채권자를 해한다함은 채무자의 재산적 법률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적극재산이 채무의 총액보다 적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채무자의 재산적 법률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채무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한다는 것이 확정되지 아니하고서는 채무자에게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76. 11. 23. 선고 75다1686 판결 등 참조)

(2)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33602 판결 등 참조).

(3)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로 인하여 무자력 또는 채무초과상태가 초래되었다는 사실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23다237804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앞서 본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인정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무자인 C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거나 혹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각으로 인하여 C가 채무초과상태에 빠졌다는 점에 대한 원고의 입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C의 ① 적극재산으로 영천공장 등(대구지방법원 D으로 경매 진행 중, 합계 1,816,559,060원)으로 존재하고, ② 소극재산으로 ㉠ 원고의 채권 151,200,700원, ㉡ 피고의 채권 758,200,359원, ㉢ 중소기업은행의 채권 3,777,373,042원, ㉣ 주식회사 E의 채권 95,810,000원, ㉤ F의 채권 115,907,240원(소극재산 합계액 4,898,491,341원) 각 존재하는바, C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 우선 적어도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중 당시 책임재산에 포함되는 부분(이 사건 부동산 가액에서 당시 설정되어 있었던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금액)이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원고의 뚜렷한 주장·입증이 없다[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2,247,840,000원인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순가액은 614,842,069원이라는 입장이다¹⁾]. ㉡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C는 구미시 G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G리 부동산'이라고 한다, 변론종결 후 피고가 제출한 참고자료에 의하면 2022. 10. 6.경 4,600,000,000원에 매각된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이고·세부적인 매매조건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없음)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아가, ㉢ 피고가 그 가액이 1,017,000,000원(을 제12호증)에 달한다고 주장하는 기계 역시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그 가치가 위 금액에 이르지 못한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위 기계의 가액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도 않았다. 위와 같이 피고가 적극재산으로 추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위 가액들을 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C의 적극재산은 8,048,401,129원 가량에 달한다.

원고는 참고서면에서 G리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합계 6,400,0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근저당권자 : 중소기업은행)이 설정되어 있었는바, 위 최고액의 70%를 당시 피담보채무로 산정하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채권최고액의 70%에 이름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바,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쉽사리 단정하기도 어렵다.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C의 피고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도, 을 제16호증(2020. 12. 31.자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이 758,200,359원에 이른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는 당시 90,054,531원만이 남아있었다는 취지로 주장2) 하고 있고, 을 제17호증(각 지급내역)의 기재는 피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C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앞서 본 여러 사정들 및 그와 더불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담보가치를 알 수 있는 뚜렷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해 볼 때, C가 이 사건 부동산 매각으로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담보가치를 피고 주장과 같이 614,842,069원으로 보더라도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무자인 C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거나 혹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각으로 인하여 C가 채무초과상태에 빠졌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뚜렷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이상,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학승

별지